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가경정 제2회 수정1차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67,533,087	47,025,993
일반회계	1,171,855,595	35,155,668
특별회계	395,677,492	11,870,325
공기업특별회계	218,295,017	6,548,851
상수도사업	76,506,955	2,295,209
하수도사업	141,788,062	4,253,642
기타특별회계	177,382,475	5,321,474
공유재산관리	38,732,187	1,161,966
의료급여기금	4,493,677	134,8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319,000	39,5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596,250	17,888
교통사업	47,313,196	1,419,396
도시철도건설사업	12,330,453	369,914
폐기물처리시설	6,163,954	184,919
도시재정비촉진	1,554,274	46,628
도시개발	59,134,230	1,774,027
기반시설 설치	5,745,254	172,35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1,65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